

화물차주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계획

□ 검토 배경

- 전속성 폐지 및 단기용차기사 적용 확대에 따라 화물차주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로,
 -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을 통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인착을 위해 화물차주 직종에 한하여 집중신고기간 6개월 연장

□ 운영계획

- (운영 기간) '25.7.1.~'25.12.31.(6개월 한시 운영)
- (적용 사업장) 화물차주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및 해당 직종의 플랫폼 운영자(플랫폼 이용 사업자 포함)
- (적용 항목) '25.7.1.부터 '25.12.31. 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의 신고,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
 - * 각 신고의 지연 및 정정신고 포함
- (적용 내용) 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
 - *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여액의 징수 면제는 제외
 - 자진신고에 적용하되, 확인 청구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
 - 다만, 동 집중신고기간 내 공단 등의 조사(국회 지적,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)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월 보수액 등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

□ 향후 계획

- 사업주 단체 등에 집중신고기간 연장 운영안내(공단)